2020학년도 제127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2020. 4. 14(화) 11:00

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 의 자 료 목 록

순	안 건 명	쪽수
1	2020학년도 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안)	1
2	2019학년도 해리초등학교 학교회계 결산(안)	2
3	2020학년도 해리초등학교 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4	2019학년도 해리초등학교발전기금 결산(안)	4
5	2020학년도 해리초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안)	5
6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안)	6
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8

2020학년도 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안)

안건 번호	1

발의일자: 2020. 4. 2.
제 안 자: 학 교 장
담 당 자: 행정실장 고석영

Ⅰ 제안 이유

❍ 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원선출

Ⅱ 주요 내용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 2. 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19학년도 해리초등학교 학교회계 결산(안)

안건 번호	2

발의일자: 2020. 4. 2.
제 안 자: 학 교 장
담 당 자: 행정실장 고석영

Ⅰ 제안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증대와 책무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함

❍ 예산이 학교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에 비추어 예산편성 절차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3 제5항
-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1조(예산회계의 결산)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의거 2020학년도 해리초등학교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561,088,000	561,088,000	561,216,060	556,512,340	4,703,720	

❍ 잉여금 처리상황

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환확정액	순세계 잉여금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결산전 이입	결산후 이월	소계
561,216,060	556,512,340	4,703,720	0	0	0	0	0	0	4,703,720	4,703,720

3. 붙임 2019학년도 해리초등학교회계 결산서(안) 1부. 끝.

2020학년도 해리초등학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번호	3

발의일자: 2020. 4. 2.
제 안 자: 학 교 장
담 당 자: 행정실장 고석영

Ⅰ 제안 이유

❍ 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의거 2020학년도 해리초등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분	1회추경예산(비율)	본예산(비율)	증감액(비율)
가. 세입 내역	375,340(100%)	293,168(100%)	82,172(28.0%)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326,922(87.1%)	231,955(79.1%)	94,967
·기타이전수입	28,124(7.5%)	28,124(9.5%)	0
·학부모부담수입	14,204(3.8%)	14,204(4.8%)	0
·행정활동수입	1,385(0.4%)	1,385(0.4%)	0
·이월금	4,705(1.3%)	17,500(5.9%)	△12,795
나. 세출 내역	375,340(100%)	293,168(100%)	82,172(28.0%)
·인적자원 운용	4,750(1.3%)	5,250(1.7%)	△500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30,162(34.7%)	97,690(33.3%)	32,472
·기본적 교육활동	46,688(12.4%)	61,620(21.0%)	△14,932
·선택적 교육활동	26,483(7.1%)	6,800(2.3%)	19,683
·교육활동 지원	43,712(11.7%)	23,240(7.9%)	20,472
·학교 일반운영	123,422(32.9%)	98,445(33.5%)	24,977
·학교 재무활동	123(0.0%)	123(0.0%)	0

붙임 2020학년도 해리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1회추경) 1부. 끝.

2019학년도 해리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결산(안)

안건 번호	4

발의일자: 2020. 4. 2.
제 안 자: 학 교 장
담 당 자: 행정실장 고석영

Ⅰ 제안 이유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목적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타당성, 관리의 투명성과 사용목적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함.

❍ 학교발점기금 결산심의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예산과-3015(2020.3.9.))

Ⅱ 주요 내용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세입액: 1,917,440원

나. 세출액: 600,000원

다. 잔 액: 1,317,440원

❍ 발전기금 결산 총괄(사업별)

사 업 명	수 입				지 출	지출잔액
	이 월 액	이자수입	접 수 액	소 계		
학생장학금	1,916,710	0	0	1,916,710	600,000	1,316,710
학생장학금이자	0	730	0	730	0	730
합 계	1,916,710	730	0	1,917,440	600,000	1,317,440

2020학년도 해리초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안)

안건 번호	5

발의일자: 2020. 4. 2.
제 안 자: 학 교 장
담 당 자: 교사 김은실

Ⅰ 제안 이유

❍ 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의거 2020학년도 해리초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예산과-3015(2020.3.9.))

Ⅱ 주요 내용

1. 건명: 2020학년도 해리초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
2. 지급일시: 입학식 날
3. 지급대상: 2020학년도 1학년 입학생 3명
4. 지급금액: 100,000원×3명= 300,000원
5. 지급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6. 지급방법: 보호자 계좌로 지급(수령증 확인)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안)

안건 번호	6

발의일자: 2020. 4. 2.
제 안 자: 학 교 장
담 당 자: 교사 엄창열

Ⅰ 제안이유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절차가 폐지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총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Ⅱ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안 14조의3, 제16조)
2.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안 제14조, 제14조의2)
3.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전담기구 구성 인원의 1/3 이상)
4.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2020년 2월 29일까지 구성 완료하여야 한다.

6. 세부 사항

가.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의 장

나.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총괄),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학교장이 위촉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

다. 본교 전담기구 구성(안)

구분	인원	자격
학부모위원	2명	‣선출된 학부모 위원(전체의 1/3이상)
교원위원	4명	‣본교 교원(교감, 학폭책임교사, 교무, 연구)
계	6명	

라. 전담기구 임기: 학교폭력 전담기구 임기는 1년(2020.03.01.~2021.02.28.(1년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마. 학부모위원 조건: '학부모'란 ①선출 당시 본교 학부모, ②2020학년도 본교 학부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20학년도 신입생, 졸업생 학부모는 제외됨.

바. 전담기구 구성 시기: 2020.02.26.(수) (교원위원은 학교의 장이 위촉 및 임명하며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 예정-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시행 예정-
③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전담기구 구성원 임기, 운영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안건 번호	7

발의일자: 2020. 4. 2.
제 안 자: 학 교 장
담 당 자: 교감 윤현경

Ⅰ 제안이유

❍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정착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원치유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지원 방법이 필요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 관련 및 법적 근거

1. 교원인사과-4109(2020.3.2.)
2.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

붙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학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 10. 2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해리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해리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라북도(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 10. 28.부터 시행한다.